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7
----------	-----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발 의 자: 양순임 의원 외 13인

김오식,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혜영, 한건희,
한신

1. 제안이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성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자격, 직무, 선발 등에 관한 내용 (안 제4조~제6조)

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8조~제9조)

마. 예산지원 및 해설사 배치 (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10. 7 ~ 2021. 10. 13 (6일간)

- 예고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성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

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⑤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성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재,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